

2024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참여자 모집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울산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2024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 지원대상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나 이)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 (졸 업) 신청일 기준 최종학년 재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
 - (취업상태) 미취업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구소득 인정액	연령 기준	기준중위소득 범위
	19세 ~ 34세	120% 초과 ~ 150% 이하
	35세 ~ 39세	60% 초과 ~ 150% 이하

- 모집인원 : 80명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1인당 최대 180만원(월 30만원, 6개월),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 (취업성공금*) 사업기간 내 취업 후 2개월 근속 시 울산페이 30만원 지원
- * 지원금 수급 중(2회차이상~ 4회차) 취업한 청년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울산일자리포털 <https://www.ujf.or.kr/job/main.do>) 또는 방문 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2층 일자리지원부)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최종제출 서류를 지원대상 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자격확인·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예비교육(카드 발급 및 상호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시작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총 5회)

2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가구소득) 연령 별/ 가구원수 별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범위에 해당해야 함(24. 1월 ~ 3월분)
 - 가구원 수 : (미혼) 부·모·본인을 가구원 수로 산정(희망 시 형제·자매 포함)
 - 소득 범위 : (미혼)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19세 ~ 34세,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120% 건강 보험료	직장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150% 건강 보험료	직장	196,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지역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혼합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 35세 ~ 39세,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60% 건강 보험료	직장	-	100,672	123,650	144,011	162,354
	지역	-	32,532	63,760	94,385	116,549
	혼합	-	101,574	124,034	145,558	163,987
150% 건강 보험료	직장	196,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지역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혼합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 35세 이상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기간내주민등록 유지
 - (나 이)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 (졸 업)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중퇴·수료, 재학생은 최종학년일 경우 지원 가능
 - 최종학년(전문대2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2~3학년 등)을 제외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 대학교, 학점인정제 재학생 신청 가능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중등교육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 (취업상태) 미취업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는 미취업으로 간주(근로계약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창업자로 간주

【 참여 제외대상 】

- ① 본 사업 참여자격(주소지, 나이, 소득, 졸업, 취업상태 등) 미충족자
- ② 2021년 ~ 2023년 울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기참여자
- ③ 군 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복무 중인 자(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④ 실업급여, 생계 급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청년도전 지원사업, 직업훈련 장려금(국비), 기타 정부지원훈련,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⑤ 내일 배움 카드, 직접 일자리사업 : 하단 표 참조

< 타제도 중복참여 가능 여부 >

사업명	동시 참여		순차 참여	
	가능	불허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실업 급여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		○
청년도전지원사업		○		○
직업훈련 장려금(국비)		○	○	
기타 정부 지원 훈련		○		○
타 지자체 청년수당·구직활동지원 유사사업		○		○
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 후 훈련 미참여	○		
	훈련 참여		○	○
직접 일자리사업	주 30시간 미만	○		
	주 30시간 이상		○	○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9.(금) ※ 4. 19. 18:00 이전 온오프라인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온라인) 울산일자리포털 접속 → 개인 회원가입 → 신청자격확인 → 제출서류 버튼 클릭
- 접수처
 - 온라인접수 : 울산일자리포털(<https://www.ujf.or.kr/job/main.do>)
 - 방문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북구 산업로 915 2층, 일자리지원부 청년일자리팀)
- 문의처 : 052-283-7203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울산일자리포털 내 구직지원금 신청자격확인 후 제출

제출서류	유의사항	발급처	
① 신청서(서식1)	- 작성 후 첨부(서명 작성)	서식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첨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 하며 미동의시 탈락처리		
③ 구직활동 계획서(서식3)	- 목표 및 세부활동 구체적으로 작성 후 첨부		
④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이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모두 표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필수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자 본인 명의 및 전체이력 표시	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가족 중 부양자 또는 납부자 명의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 될 수 있도록 발급 - 형제·자매(등본상 같이 거주)등이 건강보험을 납부하며 가구내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엔 형제·자매 등의 명의의 자격확인서 제출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3개월분('24. 1.~ 3.)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 3. 20 이후 확인)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를 발급·첨부	
⑧ 졸업(제적)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중퇴자의 경우, 최종학력 제적 증명서 제출 - 마지막 학년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첨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해당 학교 등	
선택	⑨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에 미등재된 가구원(1촌)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⑩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미만 근로중인 해당자에 한함(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근무처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증빙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선발 제외된 대상은 불인정 통지서 제출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필수	고용노동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제출서류는 **PDF 한 개의 파일로 병합 또는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목에서 특수문자(괄호, 쉼표)를 삭제해주세요.
- ▶ 파일은 **3,000KB 이하 크기**의 파일만 첨부해주세요.
- ▶ 파일 용량이 큰 경우, 에러가 나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제출자료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으로 PC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5

선정 기준 및 선정 발표

- 선정기준 : 자격 요건 충족시 모두 대상자로 선정이 원칙이나, 요건 충족자 초과로 우선순위 필요시 가구소득(50%)와 미취업기간(50%)으로 정량 평가
- 배점표

지표	배점	선발기준(점)							
합계	100점								
가구소득수준	50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0		30		40		50	
미취업 기간	50점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5	20	25	30	35	40	45	50

- 가구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급	가구소득 수준
1	중위소득 120% 이하
2	중위소득 121~130% 이하
3	중위소득 131~140% 이하
4	중위소득 141~150% 이하

- 미취업 기간 기준

※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일부터 인정

등급	미취업 기간	등급	미취업 기간
1	42개월 초과	5	18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2	36개월 초과 ~ 42개월 이하	6	12개월 초과 ~ 18개월 이하
3	30개월 초과 ~ 3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4	24개월 초과 ~ 30개월 이하	8	6개월 이하

- 선정발표 : **2024. 5. 14.(화)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통보

※ 포기자조기취업 등 발생 대비 탈락자들(자격요건 충족자) 중 고득점순 10% 추가 선발

※ 선정 발표 후 선정자를 대상으로 예비교육 실시(불참시 선정 제외)

- 예비교육 : **2024. 5. 20.(월) 14:00 예정**, 울산광역시의회 1층 시민홀

- 내 용 : 지원금의 목적,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카드 발급 신청 및 사용 방법(각종 자격증 응시료 사용제외 등), 상호의무협약, 취·창업사실신고 등

6

기타 유의사항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신청 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착오·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시 PC사용을 권장합니다. 모바일 사용시 기재사항과 첨부 파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담당자는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엔 탈락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타사업 중복, 30시간 이상 근무, 창업 등)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유사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정부 및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신청자는 사업 신청 후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전에 타사업 중복, 취·창업, 휴학(마지막 학년 졸업예정자) 진학 등을 하게 된 경우엔 반드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청년일자리팀 (052-283-7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구소득 산정방식 1부.

첨부 신청 서식 1부. 끝.

<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1 미혼일 경우

-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기본 3인(부·모·본인)"
 -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납입액)을 통해 확인

< 확인 사례 >

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3인, 부·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②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 이혼 불문)

→ 가구원 수 2인,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③ 형제·자매 등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나 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로 인정)

→ 가구원 수 3인, 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확인 필요 서류: 본인의 건강보험료(피부양자 확인용)

↳ 위의 모든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 불요

2 기혼일 경우

- (원칙)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동거 중인 경우) 가구원 수는 4인(부·모·본인·배우자)+자녀 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확인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

+소득에 모두 추가)

-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2인(본인+배우자)으로 하고(자녀가 있는 경우는 추가), 소득은 "본인 + 배우자" 확인
-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을 통해 확인

< 확인 사례 >

① **본인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본인의 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본인의 부·모 +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여부 확인), 본인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②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배우자의 부·모 +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확인 필요 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여부 확인),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위의 경우에서, 동거 중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 불요

③ **독립한 경우**

→ **가구원 수 2인(본인+배우자)+자녀 수,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중인지 여부 확인),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